#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97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박희승·정준호·김 윤

한정애 · 김영진 · 김한규

복기왕 • 이기헌 • 서영교

조계원 · 강득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 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 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 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를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 -----제53조의 규정을 준 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 용한다. <후단 삭제> 다만, 국 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 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수 있다. <u>아니한다.</u> <단서 신설>